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 건 번 호 제2022-008-050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의결연월일 2022. 5. 11.

주 문

-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가. 과 태 료 : 3,600,000원
 -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 유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55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 피심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주소 | 종업원 수 (명) |
|------|---------------------|--------|----|--------------|
| | | | | |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1)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신고(2020. 1. 14.) 받은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1. 7. 22. 기준으로 이용자 2,686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1) 2020. 8. 5.}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승계(제1항), 법 시행 전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한 고시·행정처분 중 그 소관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간주(제4항)

< 개인정보 수집현황 >

| 구분 | 항목 | 수집일 | 건수(건) |
|-------|---|-------------------------------|--------|
| 회원 정보 | <개인 회원> (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선택) 메일링 서비스 <사업자 회원> (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회사명,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선택) 메일링 서비스 | '19. 11. 19. ~ '21. 7. 22. | 2,686건 |

2. 개인정보의 취급.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의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운영 중인 웹사이트에서 웹서버로 개인정보를 송·수신 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1. 9. 9.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1. 9. 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4호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다목)',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라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5호, 이하 '고시'라 한다) 제6조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웹서버에 SSL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제1호)',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제2호)'이 포함된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암호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의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중 암호화]

피심인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하면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4호, 고시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 위반행위 | 법률 | 시행령 | 세부내용(고시 등) |
|-----------------------|------------|---------------|---|
| 안전조치의무 위반 (암호화) | 보호법 §29 | §48의2① 제4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하면서 안전한 보안서버 구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6③) |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및「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1. 1. 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원을 적용한다.

<「보호법」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단위:만원)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 | |
|---|------------------|----------------------|-------|-------|
| | | 1회 | 2회 | 3회 이상 |
| 자.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 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6호 | 600 | 1,200 | 2,400 |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 가중기준)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위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기준 금액의 1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정)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감경을 거쳐 총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 위반행위(세부내용) | 기준금액 | 가중액 | 감경액 | 최종 과태료 |
|--------------------|--------|------|-------|--------|
| 안전조치의무 위반 (암호화) | 600만 원 | 60만원 | 300만원 | 360만원 |

2. 결과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제66조제1항 및「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 (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한 내용 및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순번 - |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 | | 위반행위의 내용 | | 의 내용 및 결과 |
|------|----------------|--------|--------------------|------------|--------------|
| | 명칭 | 위반조항 | 위반내용 | 처분일자 | 처분내용 |
| 1 | | 법 제29조 | 안전조치의무 위반 (암호화) | 2022.5.11. | 과태료 부과 360만원 |

V.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2년 5월 11일

위원장 윤종인 부위원장 최영진 위원 강정화 위원 대용 위원 명흥열 위원 위 원 지성